



# 관리단체 운영 규정



**수원시체육회**

# 관리단체 운영 규정(안)

제 정 2021. 12. 30.

**제1조(근거 및 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원시회원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회의 회원단체에만 적용한다.

**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** 본회는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해당 회원단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)으로 통지한다.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그 밖의 주요사항

**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**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본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.

② 해당 회원단체 임원 및 관계자(이하 “회원단체 관계자”라 한다)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본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본회의 가입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.

④ 관리단체 지정 시 해당 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종목단체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,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원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)**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관계자는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회원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· 사무공간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본회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

④ 회원단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회원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관리위원회의 설치)** ① 본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.

1. 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  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  3. 법제·상벌에 관한 사항
  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  5. 회원단체 정관(또는 규약)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모든사항
-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
 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나눠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, 스포츠공정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 (제정 2021. 12. 30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자문위원)**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전문적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재적위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